

의안번호	2209693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5. 7. 10.
추계번호	25B2187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(수입이익금의 징수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음(제1항) 1. 제15조제1항¹⁾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(현행과 같음) 2. 「관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<신설>	재량규정
2	안 제57조(기금의 용도)	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함(제2항) 5.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품목별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. 이 경우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<신설> 6. 제16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지출<신설>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, 생산자단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	의무규정

1)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) ①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」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(讓許表)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(讓許稅率)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(수입이익금의 징수 등)	·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7조(기금의 용도)	

2. 상세 사유

□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(안 제16조제1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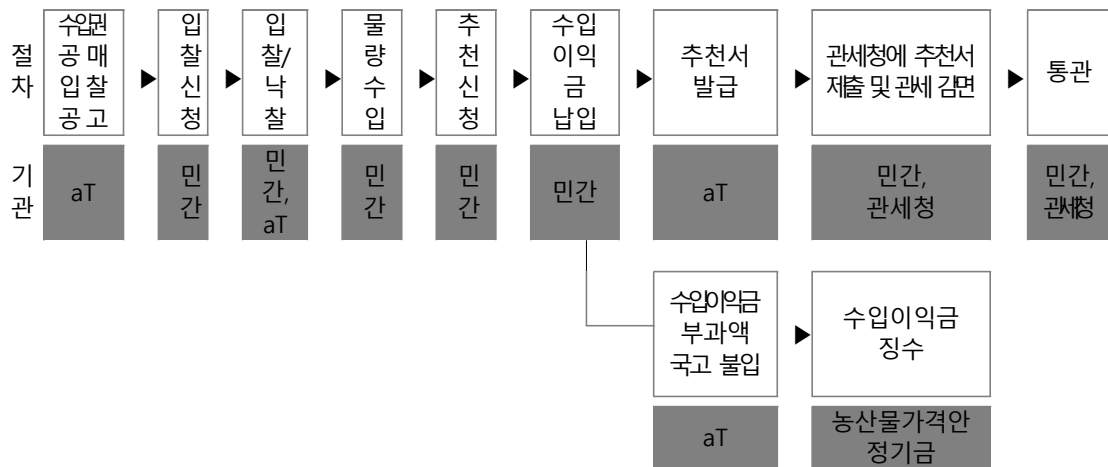
- 개정안은 현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」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(讓許表)상의 시장접근물량(이하 ‘TRQ’²⁾라 함)에 적용되는 양허세율(讓許稅率)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·징수하는 수입이익금을 「관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³⁾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게도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
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TRQ 수입방식은 「농축산물 시장 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」에 따라 지정기관배정(국영무역), 수입권공매(공개경쟁입찰), 실수요자배정(선착순) 및 혼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, 이 중 수입권공매(공개경쟁입찰)의 경우 최고가 낙찰자에게 TRQ 품목의 저율관세 수입권을 부여하며, 해당 물품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(세금, 보험료, 운송료 등 포함) 간의 차액 범위에서 응찰자가 제시한 수입이익금 중 최고가액이 수입이익금으로 징수됨

2) TRQ(Tariff Rate Quota): 저율관세할당물량

3) 「관세법」 제71조(할당관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
2.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

[표 1] 수입이익금 부과·징수 절차

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-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「관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 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게도 수입이익금을 부과·징수할 경우 이로 인한 수입⁴⁾의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행법에 따른 TRQ와 달리 할당관세는 국내외 시장 여건에 따라 매년 적용 대상 품목과 세율, 물량, 기간 등이 변동*되어 개정안에 따른 수입의 증가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*배추: ('24) 5.10~12.31, 수입전량, 27→0%, ('25) 1.24~4.30, 10천톤, 27→0%

*오렌지: ('24) 1.19~6.30, 5천톤, 50→10%, ('25) 1.24~2.28, 10천톤, 50→20%

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, 현행법에 따른 TRQ 품목은 수입권공매, 실수요자 배정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이 중 수입권공매 품목의 수입권 낙찰자를 대상으로 이익금을 징수하고 있음. 반면, 할당관세*는 물가 안정 효과가 신속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배정(선착순)**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대상 물품의 신속한 시장 공급 의무를 부여함

* 특정품목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조정(기본세율의 ±40%p 범위 내)

** 선착순 배정이 원칙이며, 일정 요건(수입실적 등)을 충족한 실수요자에게 배정

4) 현재 수입이익금 제도의 수입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 중 법정부담금(59-593) 사업에 반영됨

□ 기금의 용도(안 제57조제2항)

-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수입이익금 부과·징수 대상 품목의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, 농산물 수입이익금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지출, 생산자단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수입이익금 부과·징수 대상 품목의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은 수입이익금 중 50%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
- 그러나, 현 시점에서는 수입이익금 부과·징수 대상 품목의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,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, 개정안은 생산자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－ 안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 부과·징수 대상 확대에 의한 수입 증가분 내에서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수입과 지출 증가 규모를 비교할 수 없음
- 안 제5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지출은 현재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비축지원사업⁵⁾을 통해 지출하고 있어, 개정안은 동 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5) 농산물가격안정기금(3031-323)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

[참고자료] 현행법에 따른 수입이익금 징수 현황

□ 수입이익금 품목별 징수실적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참깨	15,863	35,639	32,655	12,219	12,973
참기름	1,155	2,017	2,132	1,465	1,356
콩	5,577	2,137	3,038	1,992	10,057
콩나물콩	12,038	7,377	13,597	19,445	21,700
팥	63	57	249	1,109	798
녹두	18,224	9,734	15,205	10,189	9,103
메밀	1,014	1,061	1,119	328	600
마늘	—	—	18,901	1,702	—
깐마늘	—	—	1,103	—	—
생강	—	—	—	1,664	—
귀노아	—	—	—	—	56
합 계	53,934	58,022	87,999	50,113	56,643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